

대구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9가단17833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퇴거]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B

피고C

변론 종결2020. 10. 23.

판결 선고2020. 1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광역시 중구 D 대 11㎡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4,15,16,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1㎡(목조 스테트지붕 단층 상가1동)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구광역시 중구 D 대 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상에 별지 도면 표시 14,15,16,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1㎡(목조 스테이지붕 단층 상가1동)를 무허가로 축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것을 구한다.

2.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신종화

별지